

提案制度의 由来와 運用

〈Ⅳ〉

—美國등의 聯邦發明制度를 中心으로—

7. 美國國家公務員 發明에 관한 政府의 統一의 特許方針命令 10096號

(1950年 트루먼大統領命令)

公務員發明에 관한 트루먼大統領命令으로서 1947년에 이어 두번째의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科學 및 技術分野에서의 發明의 進歩가 국가公務員에 의한 政府內의 활동에서 이루어지거나 정부는 이들 활동을 遂行하기 위하여 每年巨額의 財政支出을 하고

다) 이러한 發明의 進歩는 國民的 資源을 크게 構成하고

라) 公務員에 의해 政府機能내에서 이루어진 發明的 產物은 政府의 사용에 제공함이 妥當하고

마) 公務員의 發明에 대한 그 公務員의 權利는 適切한 절차에 따라 확인해야 하고

바) 이 명령이 정하는 方針의 施行은 適當한 行政的 措施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憲法과 法令에 의하여 미리 歸屬시킨 權限에 따라 大統領 및 陸海空3軍最高司令官의 資格으로서 국가公務員의 發明에 관한 政府의 統一의 特許方針의 樹立과 運用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第1條 이하의 基本政策은 국가公務員에 의하여 이날 이후 이루어진 發明에 관해서 모든 政府機關이 適用되는 것이다.

(1) 정부는 국가 公務員에 의하여

(ㄱ) 勤務時間 중

(ㄴ) 施設·設備·資材·情報 또는 公務 중

의 다른 公務員의 시간 또는 정부로부터 勞力 등이 제공되거나

(ㄷ) 그 發明자의 公務와 직접적으로 關聯하거나 그 公務의 결과로 이루어진 모든 發明에 관한 완전한 권리 權原 또는 權益을 取得할 수 있다.

(2) 위의 (가)項에 정하는 基準의 1~2 이상에 의하여 制定되는 政府의 貢獻이 그 發明에 관한 권리, 權利 및 權利 전부를 정부에 讓渡시키는 要請에 대해 公正妥當하다고 할 수 없을 경우나 또는 취득할 수 있어도 該當機關은 公務員發明特許審査會長의 承認을 條件으로 雇傭 중의 그 發明에 관한 權利를 그 發明자의 所有로 局限시켜야 한다.

다만 政府의 모든 目的을 위하여 實施權을 許與하는 機能과 더불어 그 發明에 관한 非獨占的이고 取消不能의 實施料 없는 權利는 政府가 留保하고 또한 이같은 유보는 위의 조건과 같이 그 發明에 대해 交付되는 內·外國의 特許狀文面に 記入할 수 있다면 그 뜻을 명백히 해야한다.

(3) 그 發明을 創出함에 관계 있는 사실과 情況에 대해 위의 (가)項 및 (나)項의 規定을 適用 함에 있어

(ㄱ) 기술·기계·제조품 또는 合成物에 대해 發明하고 改良하거나 完成하기 위하여 雇傭 또는 任命된 職員의 發明

(ㄴ) 研究·開發業務 또는 그 모두를 수행하고자 고용하거나 임명된 職員의 發明

(ㄷ) 政府의 出資에 의한 연구·開發業務 또는 두가지를 모두 수행하기 위해 監督하

고 指導·協力·審査하기 위하여 고용 또는 임명된 직원의 발명

(2) 이같은 활동을 營爲하는 政府機關, 非政府機關 또는 私企業사이에서 連絡事務에 從事하기 위하여 고용 또는 임명된 자의 발명이나 이 명령의 第4節 (1)項에 따라 公布되는 規程에 정한 그 밖의 範疇에 속하는 使用者에 고용된 직원의 발명에 대하여는 위의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規定하고 그외의 직원에 의한 발명은 이들 위의 (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두가지의 추정 중 어느것도 각 발명이 된 조건에 隨伴한 사실 또는 정황에 따라 이를 翻覆할 수가 있다. 또 이 추정규정도 불구하고 발명이 다음 (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뜻의 결정을 排除하는 것은 아니다.

(4) 정부가 前記 (1)항의 규정에 따라 발명에 관한 권리·권원 및 권익의 전부를 취득하지 않거나 (2)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의 모든 목적을 위하여 실시권을 許與하는 技能과 같이 그 발명에 관한 非獨占의이며 取消不能하고 實施料가 없는 실시권을 유보하지 않는 경우에 정부는 그 발명에 관한 권리·권원·권익의 전부를 法律에 따라 그 공무원의 소유에 限定시키는 것으로 한다.

(5) 제1절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措處나 취득된 권리에 대해서는 심사회장의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회장에 대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第2條 국가의 安全保障 또는 일반국민의 衛生·安全 또는 福祉를 考慮하여 다음 基本政策이 정부의 연구, 개발활동의 成果인 발명에 관한 情報를 蒐集하여 公衆을 위해 普及化되도록 조처한다.

(1) 이 명령 제1절 (1)항에 따라 발명에 대한 권원에의 권리를 정부에 양도하는 것이 명확하게된 정황아래서 그 발명이 이루어진 때는 각 관계기관은 特許廳에 申請하는 特許出願을 準備하여 提出하고 심사회장에 대하여 遲滯없이 그 발명을 開示한다.

심사회장은 정부에 이익이 된다고 인정될 때는 특허를 출원시키거나 그 발명을 公告하여 충분히 開示토록 한다. 다만 農務省의 직원에 관계되는 어떠한 종류의 植物特許出願도 農務省의 現行慣例에 따르며 長官의 승인없이 출원해서는 안된다.

(2) 심사회장이 정하는 方針 政策에 따라 국가나 정부기관이 소유 혹은 管理하는 발명 또는 그 권리는 그 실시권을 포함하여 索引을 붙여서 整理하고 그 複寫·概要·分析 및 拔萃는 이를 保存하여 모든 정부기관·公共圖書館·大學·商業團體·科學·技術者그룹 商工業團體 및 그외의 關係團體의 사용에 제공되어야 한다.

第3條 (1) 국가공무원발명특허심사회를 設置하고 大統領이 임명하는 회장 1명과 다음 各省廳에서 差出하는 대표 1명을 委員으로 委屬한다.

農務·商務·內務·法務·國務·聯邦社會保障·國防總省·文官任命委員會·全國航空諮問委員會·一般任用委員會

이상의 각 대표는 그 대표의 代理 1명과 같이 해당 정부 기관의 長이 指名한다.

(2) 심사회는 이 명령 또는 大統領命令 9865호의 규정에 따라 影響을 받는 정부의 特許政策 諸部門運用에 관해 심사회장에게 助言 또는 協議에 應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운용의 是正이나 改善을 勸誘한다.

(3) 本節(1)항에 정하는 각 정부기관은 이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법률에 따라 1946년의 獨立官署經費支出法 214條에 의거 本審査會에 財政支援을 한다. 또 상무성은 심사회 및 심사회장이 사용할 事務施設을 제공한다.

(4) 심사회장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회장에 조언 또는 支援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 및 實行機關을 設置한다.

(5) 심사회장과 科學研究開發 各省連絡協會(1947년 12월24일 大統領명령 9912호)의 회장은 共通의 關心事項의 正當한 調整

을 行하기 위해 協議會를 설치하고 維持한다.

第4條 이 명령에 정하는 정부의 統一的인 運用 및 그 政策에 따른 통일적인 업무를 行하기 위해 심사회장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權限이 賦與된다.

- (1) 이 명령에서 指摘된 政策의 실시, 運用에 관하여 각 기관과 협의하고 勸告한다.
- (2) 심사회장과 협의한 후 위의 政策을 수행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規則 案을 作成하여 심사회 권고를 첨부하여 대통령의 承認을 要求한다.
- (3) 政策運用에 관한 報告書를 每年 그리고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시정권고는 隨時로 대통령에게 제출한다.
- (4) 공무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발명의 歸屬이나 권리에 관하여 정부기관과 그 직원과의 사이에 論爭 또는 異議가 발생하여 當事者의 어느 쪽에서든 審議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 限하여 이를 最終的으로 裁定한다.
- (5) 대통령 또는 법률에 따라 前記 이외의 부여되는 임무를 수시로 수행한다.

第5條 1947년 6월14일자 대통령명령9865호에 정하는 상무장관 및 상무성의 권한·임무는 이를 심사회장에 委任한다. 심사회장은 이같은 권한과 임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정부기관

또는 공무원에 委任할 수가 있다.

그러나 명령9865호는 本節 이외의 대통령명령의 어떠한 규정으로도 訂正이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

第6條 각 정부기관은 이 명령시행을 위해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 이러한 조치는 이 명령에 符合하고 혹은 4절 ②항에 따라 制定된 規則에 答습하는 규칙의 公布를 포함한다.

第7條 이 명령에서 사용하는 다음 名稱은 單複數 모두 이 명령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定義한다.

- (1) 政府기관이라 함은 모든 행정기관·獨立된 委員會·審議會·部·廳·局 그의 정부 행정부문의 시설(資格이 있는 독립된 調整委員會, 完全政府所有法人, 스미소니언博物館을 포함)을 말하나 原子力委員會는 포함되지 않는다.
- (2) 국가공무원이라 함은 이 명령 4절 ②항에 따라 공포되는 규칙에 의하여 제외되는 非常勤顧問이나 被傭者를 제외하고 軍人을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의 전직원을 말한다.
- (3) 발명이라 함은 技術·機械·製造品·意匠 또는 合成物 등의 그 新規性있고 有用한 개량 혹은 어느 種類的 植物로서 美國의 特許規程에 따라 특허할 수가 있거나 특허할 수가 있다고 추정되는 것을 말한다. (C記)

● 東南亞地域 工業所有權視察團 派遣 ●

— 全經聯·熱管理協會와 共同으로 —

本會는 오는 11月22日~12月3日(12日間)에 日本을 비롯한 自由中國, 香港 등 東南亞地域의 工業所有權制度 運用 및 企業의 特許管理狀況을 調査研究하기 위하여 全經聯 및 熱管理協會와 共同으로 第3回 工業所有權 海外視察團을 派遣한다.

會員企業의 任員 및 中堅幹部로서 構成하는 이번 해외시찰단은 우리나라와 工業所有權協定을 締結했을뿐 아니라 輸出競争國인 자유중국, 香港 등 동남아제국의 企業內 特許管理狀況과 우리나라高品の 特許紛爭 등을 把握하고 아울러 특허제도 運用과 기업의 特許情報活用方案 등을 調査研究하여 국내기업에 援用實施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한편 參加申請 磨勘은 10月20日(水)이며 視察團 派遣에 따른 諸般問議事項에 대한 連絡은 本會事務局(25—2830, 26—5978)에서 取扱한다.